

SEBI

Social Economy
Brief & Issue



Contents

- 01 통계로 보는 사회적경제 동향
- 02 사회적경제 정책동향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의의와 한계
- 03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의 동향
 - 충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 충남 사회적기업지원센터
 - 충남 마을기업지원센터
 - 충남 협동조합지원센터
 - 충남 사회적경제판로지원센터
 - 충남 사회적기업협의회

집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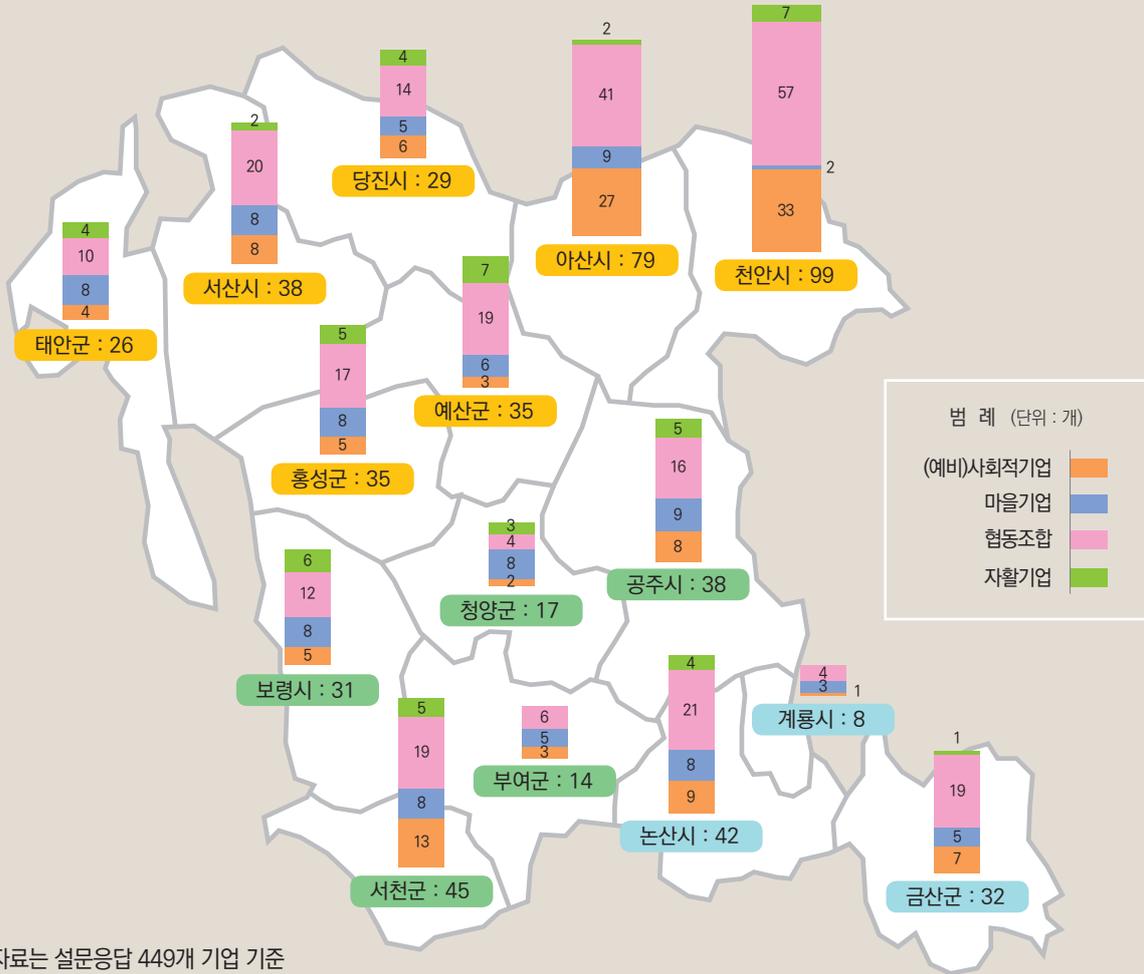
전지훈 충남연구원 연구원
이홍택 충남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춘섭 충남연구원 전임책임연구원
홍은일 충남연구원 연구원

01

통계로 보는 사회적경제 동향

SEBI

1.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입지 현황 (2016. 1월 기준, 568개)



※ 이하 자료는 설문응답 449개 기업 기준

2. 업종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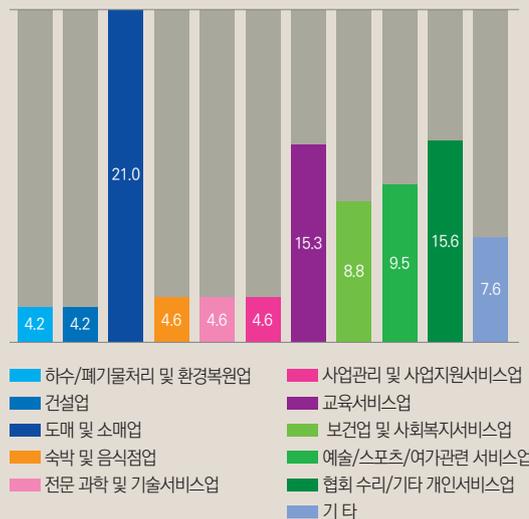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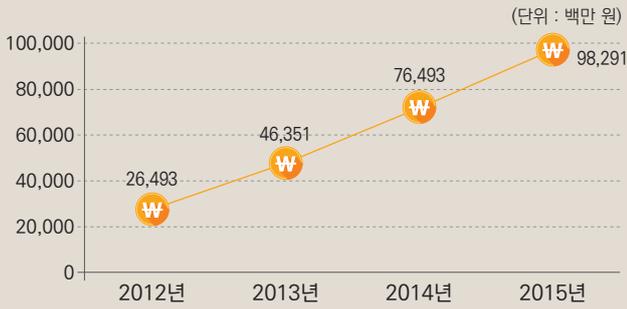
농업·임업 및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3. 서비스업 세부 분야별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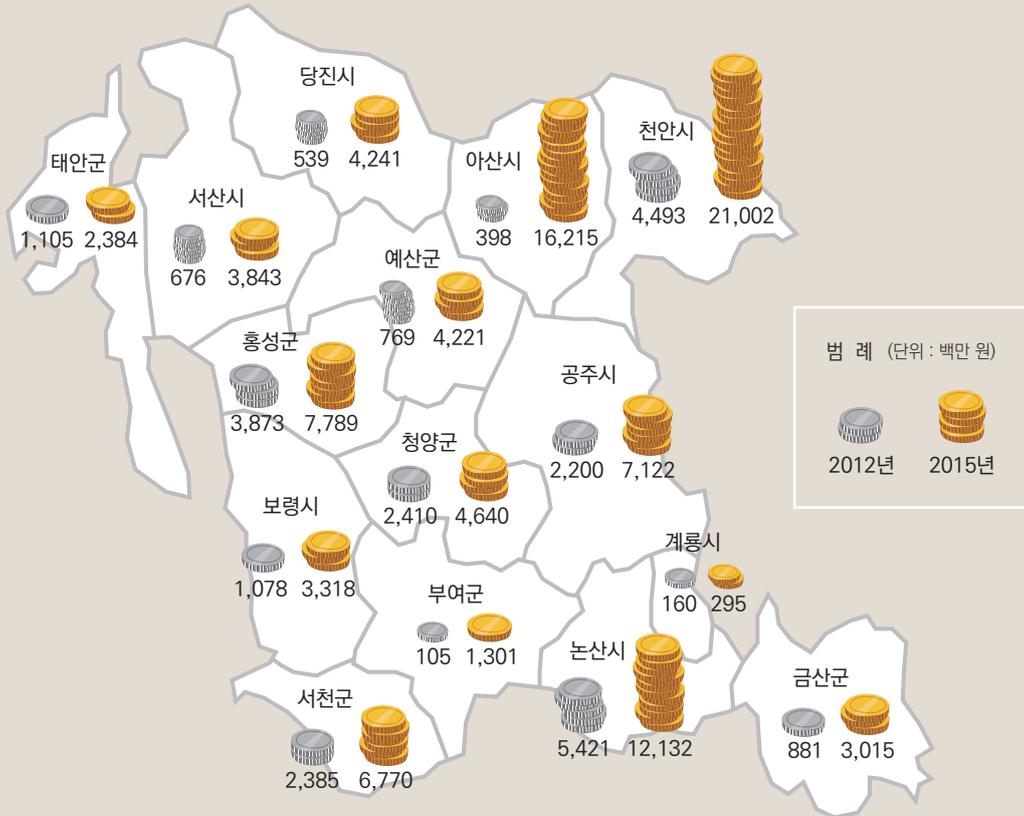
4. 연도별 매출액 규모



5. 연도별 평균 매출액 규모



6. 지역별 매출액 규모



7. 기업 유형별 평균 매출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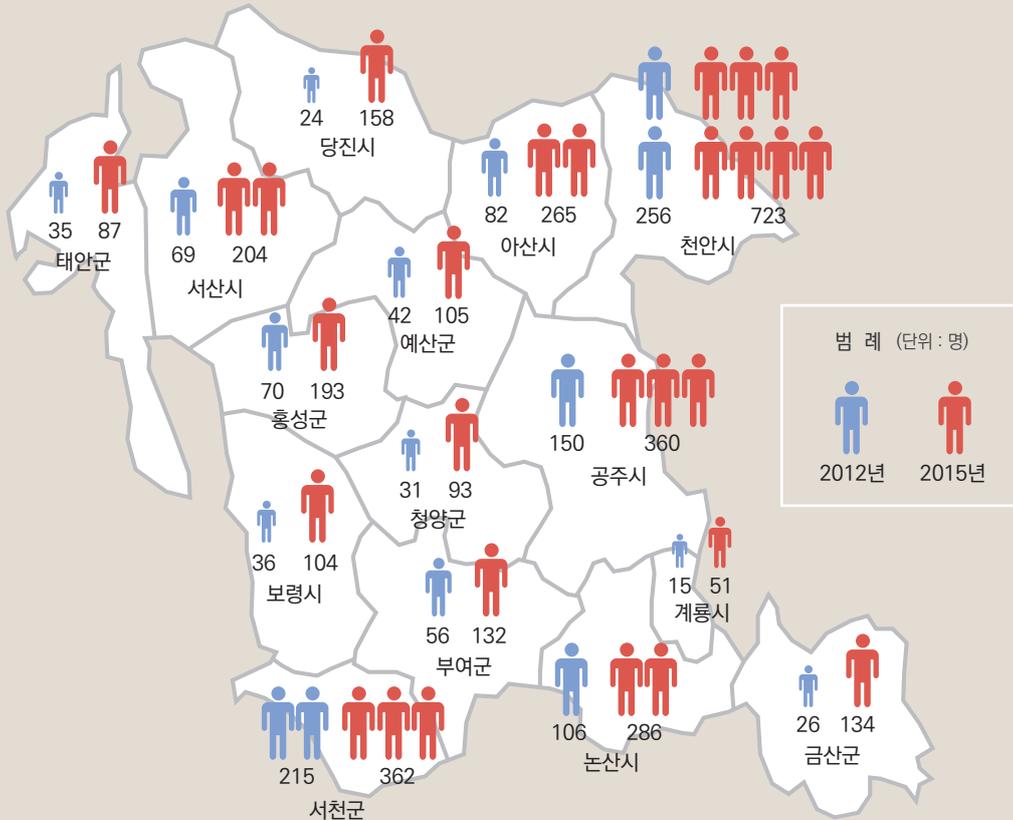
8. 총 종사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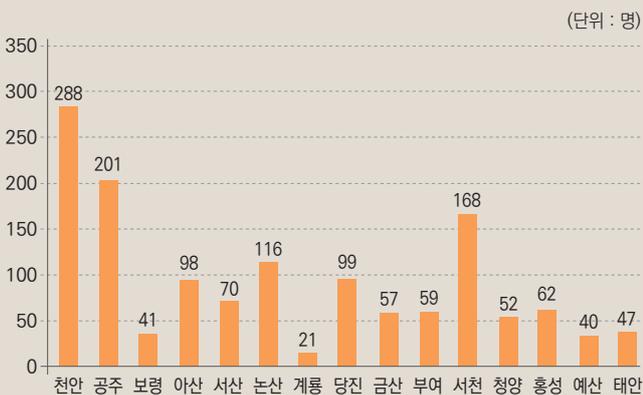
9. 평균 종사자수 현황



10. 시군별 총 종사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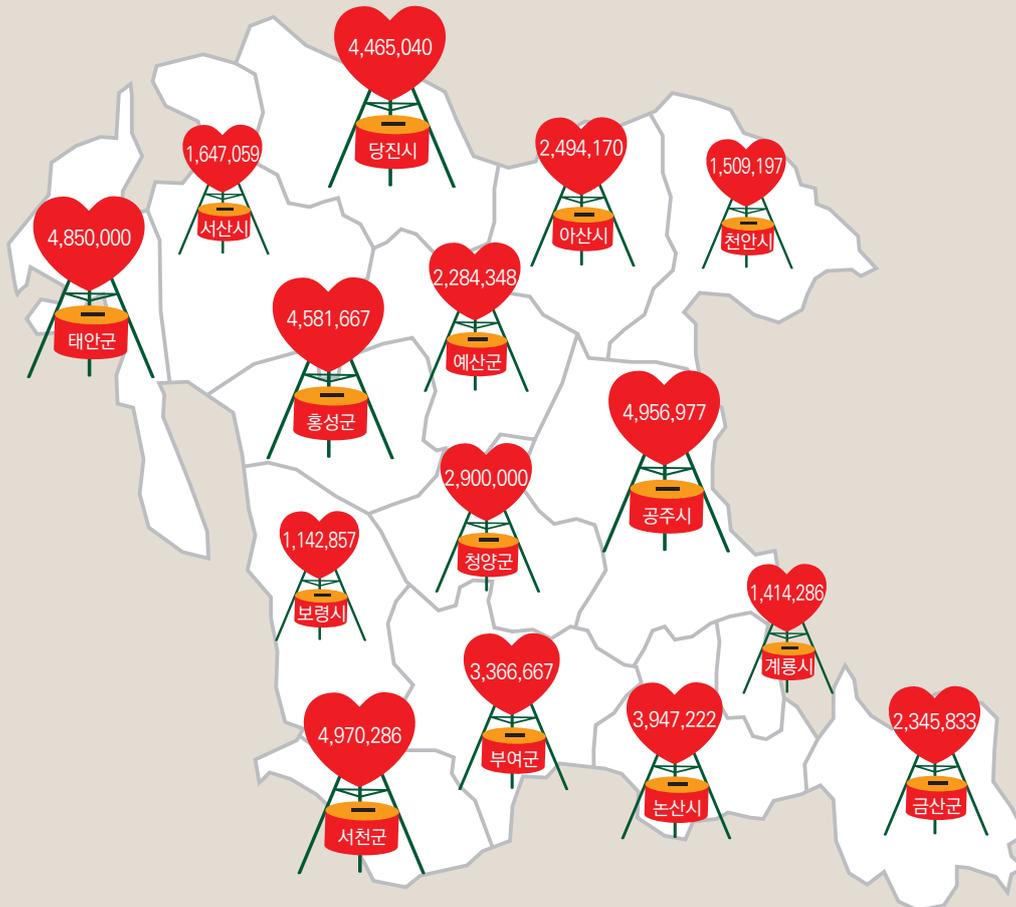
11. 지역별 취약계층 근로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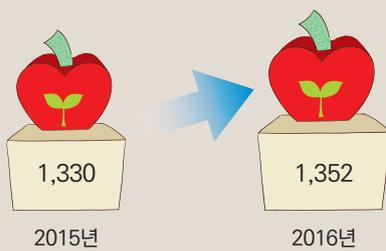
12. 유형별 취약계층 근로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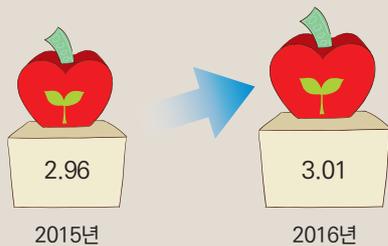
13. 지역별 평균 사회공헌비용 (2016년, 단위 : 원)



14. 연도별 사회공헌비용 (단위 : 백만 원)



15. 연도별 평균 사회공헌비용 (단위 : 백만 원)



16. 사회공헌 주요 분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의의와 한계

1.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논의는 19대 총선과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정책공약 요구사항으로 등장하였다. 2014년 국회에서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제시하여 발의하였으나 결국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반대로 인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2016년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새

누리당에 의해 각각 발의되었다. 우선 지난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는 윤호중의원, 서형수의원, 김경수의원이 포용적성장과 경제민주를 주도할 핵심 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일명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윤호중의원이 발의 취지문을 통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보다 2개월 늦은 2016년 10월 11일에 발의하였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생태계 조성 및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구축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수년간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대상으로 정책기반의 사업들이 시행되었고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확산된 것이 사

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유사한 조직과 사업내용으로 정책사업과 육성지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사회적경제라는 보다 상위적 개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정책이나 사업의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본 원칙으로서 사회적경제를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사회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인정(recognition)을 선언해야 함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¹⁾

1) 김혜원. (2016).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 : 사회적기업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정책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자료 참조.

게다가 한국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는 근거법령 없이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조례로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이후 지자체별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0년 마을기업(커뮤니티비즈니스)이 중앙부처 사업으로 시작되면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사회적경제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시점을 전후하여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왔던 것이다.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은 총 440개에 이르고 있다(조례 331개, 시행규칙 109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의 종류는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조례, 사회적경제 부문별 지원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조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례, 사회적경제의 정의에 따른 조례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별로는 광역 지자체별 조례가 전체 17개 광역 시도 중 9개 광역(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남, 충남, 제주)에서 10개,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총 71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들은 관련법령에 비해 근거가 미약하고 자치단체장의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2016자료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근거할 수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수립되어 난립하고 있는 조례들을 근거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내용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우선 발의하였는데, 같은 당 김경수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서형수 의원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발의하였다. 그리고 10월 11일 새누리당의 유승민의원도 자신의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승민의원 법안은 본인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다르지 않으며 윤호중 의원 발의안은 19대 국회에서 신계륜의원이 발의한 내용에서 2개조항만을 수정한 것으로 내용은 유사하다.

현재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 4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관련 정책조정과 협의를 위해 대통령지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별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며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관련 정책을 조정한다. 둘째로 사회적경제 정책실행을 위해 기존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확대 개편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신설하고 시도단위에 업무를 담당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셋째,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고 각 부처에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해 사회적금융과 발전기금조성, 공공조달, 조세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발의한 의원별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비교]

구분	유승민(19, 20대) 발의안	신계륜(19대), 윤호중(20대) 발의안
목적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통합정책 추진	사회적경제 이념 확산 및 사회적경제 친환경 생태계 구축
해당 조직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연초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센터	신협, 농협(경제, 금융지주 제외), 수협(중앙회 출자회사, 은행업무 제외),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업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생협,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법인단체	
관리 조직	대통령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와 한국사회적경제원	
재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지원정책	공공기관우선구매, 시설미 지원,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민간참여와 연계지원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5),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참조 수정

이러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내용에 대해 국회입법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자료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타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와 경제일간지 등 자유시장경제의 영역에서는 자유경쟁의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역동성과 창의력의 상실을 우려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최근 2016년 9월 7일에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우선 현재 장기저성장시대에 진입하여 경제사회 불안이 심화되는 시기에 경제적 성장과 혁신이 필요할 때로서 협력과 연대의 사고는 경제의 동반하락을 의미하며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적 시장경제로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면서 시장경제에서 경쟁력 없는 소위 ‘돈먹는 하마’, ‘좀비기업’들만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토대로 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3.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의의와 한계

이러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같은 보수적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갖는 의의와 필요성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1998년 IMF사태 이후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정부와 기업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양극화, 사회적 배제와 같은 영역에 대해 보완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서 사회적경제의 공식화는 이에 대한 정책 영역의 편입을 비롯하여 제도적으로 주체적인 경제영역의 일부분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사회의 다양한 경제활동들과 범주를 구분하고 협력 및 경쟁의 활동들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도 검토자료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에 ‘포용적 성장’을 수용하여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는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농협, 신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정체성을 규정하고 사회적경제활동과 용어적 의미의 보편성을 확보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업조직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분절된 각 조직들의 활동은 사회적경제라는 통합된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협력과 연대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농협, 신협 등 개별법률에 의거한 조직들에 대한 제외나 포함의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검토의견을 통해 언급하였다.

셋째로는 시민들에게 경쟁을 강조하는 기존 시장경제영역과 함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선택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활동이 단순한 경제영역의 조직활동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와 주민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호혜, 협력에 의한 사회시스템의 확장과 함께 다양한 경제활동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의가 있는 법안이지만 법안의 내용적 측면에서 우려와 함께 비판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주요한 3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념규정의 차원에서 현재 법안들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매우 추상적이고 확장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와 영역의 명확한 규정을 거치지 않고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제시한 이후 조직이나 기업의 유형과 운영 원칙을 제시하면서 구체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경제를 기능적으로 규정하여 관리적 측면으로 법안을 한정하는 한계를 내포할 수 있다. 즉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을 포괄하는 상위법으로서 기본법이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²⁾

또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각기 특성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법률기준에 따라 획일화

2) 권재열(2015),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총칙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亞洲法學」, 제9권 3호. 내용 참조.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조직을 규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선택에 의한 등록주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조직들은 정부지원이나 보조금을 받는 조직을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추후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일괄적 관리, 통제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법안에서 제시하는 사회적경제의 거버넌스 구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우려와 변화의 목소리가 있다. 우선 기본법은 정부의 통합과 수직전달체계를 통한 관리 감독의 통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영역과 지역의 특성을 인정하고 다양성, 자발성, 자율성, 독립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 보장하는 방향의 내용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위계적 거버넌스 체계가 아니라 지역의 권한을 인정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한 권력배분의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관리를 사회적경제원의 기능강화보다는 지역별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나 전문조직간 협력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당사자(연합)조직들이 실질적인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재로 활용가능한 연구조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운영의 방향도 요구된다.³⁾

4. 나가며

2016년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국정공백이 발생한 전례없는 정치혼란의 상황이다. 하지

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경제와 민생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지난 12월 14일 기획재정부와 현안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비관적인 향후 경제상황을 주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한 유승민 국회의원은 11월 16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민주공화국과 사회적경제’ 주제의 특강을 실시하였는데,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를 하루 속히 우리 경제체제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는 제도적 범위에 포함되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적 운용으로 인해 정책 효과성이 약화되고 있고 민간에서 진행되는 통합의 시도마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계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사회적경제활동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제도적 통합으로 정책적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담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시급함과 동시에 충분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경제 자체가 전체 사회적, 경제적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조직활동인 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과 함께 위에서 제시한 우려 및 한계점들에 대한 충실하고 비판적 검토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3) 사회적경제기본법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대책위원회(2014) 자료 참조.

충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기관소개

충남 사회적경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모니터링, 지역자원 발굴 및 모델 개발 등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이다. 2011년 2월 충남연구원 부설기관인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개소한 이래, 꾸준히 연구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 6월 조례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상근인력은 총 4인으로 센터장 1인, 연구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동향

2016년 연구센터는 충남 사회적 금융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등 총 6건의 연구조사,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등 10건의 기반조성,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도민교육 등 10개 과정 총 6,5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구분	주요사업
현장 기반 연구조사 수행 (6건)	① 충남 사회적 금융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② 공유경제의 현황 및 활성화 전략
	③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④ 충남 적정기술 브랜드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10건)	① 충남 사회기술혁신포럼
	② 충남 사회적경제 작은연구 지원사업
	③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 세미나 「한중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
	④ 사회적경제 해외 연구조사(영국)
	⑤ 충남연구원총서, '현장에서 일구는 사회적경제' 발간
	⑥ 2016년 사회적경제 한마당 대회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10개 과정)	①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도민교육
	② 사회적경제 전문 교육강사 양성 아카데미
	③ 사회적경제 기업인 리더양성 아카데미
	④ 충남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⑤ 충남도내 제대 군인 대상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충남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기관소개

충남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지원, 경영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관이다. 2012년 선정된 이래 꾸준히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상근인력은 총 5인으로 센터장 1인, 팀장 1인, 매니저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동향

2016년 충남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① 현장 밀착형 인증 컨설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환컨설팅을 실시하였다. ②지역사회 사회적기업 설명회로,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제고하고, 사례를 통한 조직의 미션제고·선배 사회적기업가의 지식 공유 등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설명회의 질을 높였다. ③수요조사를 통한 현장 맞춤교육으로, 조직형태별 설립절차 교육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적기업 진입을 도왔다. ④ 스토리텔링과 결합한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2014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상품 및 마케팅 지원의 요구에 대해 마케팅 아카데미 등을 통해 개별 기업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경영역량 강화 실무교육, 프로보노 연계 전문경영 컨설팅, 윤리경영 관련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다.

충남 마을기업지원센터

기관소개

충남 마을기업 지원센터(이하 마을센터)는 도내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교육, 컨설팅, 현장지원, 심사 지원 등)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관이다. 2012년 이래 마을기업 지원 기관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마을센터 상근인력은 총 4인으로 센터장 1인, 실장 1인, 매니저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센터의 주요 활동은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도민과 단체에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 및 정기 상담이다.

기관동향

2016년 마을센터는 더 나은 지원을 위해 다음 4가지 활동에 집중하였다. ① 마을기업 현장분석에 기반한 컨설팅 지원으로, 마을기업수가 100여개로 늘어나면서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상반기 마을기업 현장조사를 실시 현황분석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토대로 업종 및 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효과적인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② 마을기업가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으로, 마을기업가로서 기초역량을 다지고,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 경영스쿨 등을 열었다. ③ 우수 마을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④ 마케팅지원으로, 일부 마을기업은 상품화 및 제품 판촉물 제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내 마을기업 제품이 일반 온라인 쇼핑몰 최소 입점 기준 충족을 목표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홍보물 제작 지원을 하고 있다.



충남 협동조합지원센터



기관소개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을 연계하며,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고 거름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간지원기관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충남 협동조합 지원 업무를 맡고 있으며 실장 1인, 매니저 2인으로 총 3명이 일하고 있다.

기관동향

2016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① 협동조합 설립상담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지원으로, 지역별·업종별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 요구에 따라 상담 매뉴얼과 제공서류를 표준화하는 등 전문화된 설립 상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가조건을 사전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지원하였다. ② 협동조합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정기총회 및 경영공시 교육 등 필수교육과 현안문제(세무·인사노무, 판로)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조합내 역할 및 갈등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③ 협동조합 경영공시 지원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및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총액 30억 이상의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방문하는 등, 경영공시 교육 및 자료 작성을 지원하였다. 이외 신규모델 발굴 및 확산,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충남 사회적경제판로지원센터



기관소개

충남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센터(이하, 판로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판로지원을 통해 지역의 순환경제를 일구는 기반조성, 효과적 수요시장 조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2014년 7월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센터의 운영은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가 위탁하고 있으며 팀장 1인과 간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동향

2016년 판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판매전 및 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 기업과 도시의 단체 등과 연계 판로망 개척지원 등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① 전시판매전 및 박람회 사업 등을 통한 매출 131,720천원, ② 따숨쇼핑물 운영을 통한 매출 33,641천원, ③ 사회적경제 기업간 내부순환거래를 통한 매출 151,265천원, ④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한 매출 146,087천원, ⑤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판로확대를 통한 매출 45,551천원 등 2016년 11월 현재 505백만원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특히 따숨물 입점을 제품에서 서비스 상품으로 확대하여, 현재 따숨물에는 57개 기업 404개 상품이 입점케 하였고,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도민공청회, 공공구매 담당자 교육 및 구매상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충남 사회적기업협의회



기관소개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충남지역 (예비)사회적기업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새로운 경제모델 구축 등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사회통합을 기여하고자 2011년 설립·운영된 당사자 단체이다. 현재 협의회는 협의회장 및 부회장,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진은 사무국장 1인과 실무인력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동향

2016년 협의회는 시군·업종네트워크 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한 모임과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업종 협업 모델 발굴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은 교육업종의 협업 모델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16년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촉진 등을 위한 조례제정과 함께 사회적기업 윤리경영 추진을 통해 내부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의 질을 확보하고, 외부적으로는 판로확보라는 목적 하에 진행하여, 조례제정과 인식확산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